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목적에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지원’을 명시〉

■ 허종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119호)

2026. 3.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목적에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지원’을 명시	2
2. 화력발전에 대한 세율 인상 및 탄력세율 적용	5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허종식의원 등 10인
2. 제안연월일 : 2026. 1. 16.
3. 회부연월일 : 2026. 1.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의 부존자원 보전·환경보호·주민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특정시설분 중 발전용 원자력·화력발전에 대해 kWh당 각각 1원과 0.6원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화력발전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등 환경·사회적 부담이 상당함에도 원자력발전에 비하여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어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있으며, 원자력·화력발전은 탄력세가 적용되지 않아 지역의 환경부담 수준이나 재정수요를 세율에 반영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됨.

이에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원자력발전 세율 수준으로 상향하여 발전원별 환경부담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원자력·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에도 탄력세 적용을 허용함으로써 환경부담이 큰 지역이 조례에 따라 세율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환경·안전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6조 등).

III. 검토의견

1.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목적에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지원’을 명시

개정안은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목적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지원’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41조 및 제142조).

현 행	개 정 안
제141조(목적)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보전, 환경 보호·개선, 안전·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u>개선사업</u>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한다.	제141조(목적) ----- ----- ----- ----- <u>개선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지원</u> ----- ----- -----.
제142조(과세대상) ① 지역자원시설세는 주민생활환경 <u>개선사업</u> 및 <u>지역개발사업</u> 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특정 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 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구분한다.	제142조(과세대상) ① ----- ----- <u>개선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지원 및 지역개발사업</u>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46조제2항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과·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지역자원시설세는 과세대상에 따라 특정자원분(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특정시설분(컨테이너,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및 소방분(건축물, 선박)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음.

이 중, 특정시설분에 속하는 원자력발전소 및 화력발전소의 주변지역들은 상당한 외부불경제 효과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대기오염, 온배수 배출, 중금속오염 등의 환경적 피해, 주변 부동산 가격하락, 지역산업 위축 등의 경제적 피해 등이 나타나고 있음. 또한,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은 주로 타 지역에서 사용됨에 반해 전력 생산으로 인한 피해는 발전소 주변지역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도 맞지 않음.

그러나, 「지방세법」상의 지역자원시설세 규정에서는 일반적인 주민생활환경 개선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을 뿐,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지원 및 보상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에 개정안은 지역자원시설세 징수 목적에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지원’을 추가하여 발전소 운영으로 인해 외부불경제 효과를 가장 크게 경험하는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현행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전력산업
기반기금을 재원으로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실시 근거
를 규정¹⁾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추가적으로 「지방세법」상 지
역자원시설세를 재원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을 추진하
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개정안에 대해 발전소 주변지역과 그 외의 지
역을 구분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에만 지원
을 한정할 경우 혜택을 받는 주민과 그렇지 못한 주민간 갈등이 유발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신중한 입장임.

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여 전원(電源) 개발을 촉진하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3조(재원과 지원금의 결정) ① 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
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에서 지원사업을 위하여 지원되는 금액(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결정기
준은 발전소의 종류·규모·발전량과 주변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2. 화력발전에 대한 세울 인상 및 탄력세울 적용

개정안은 화력발전에 대한 세율을 킬로와트시(kWh)당 0.6원에서 1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원자력·화력발전에 탄력세율 적용을 제한한 단서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46조).

현행	개정안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생략) ②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략) 3. 화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7원. 다만, 액화천연가스를 연소하여 발전하는 경우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6원으로 한다. ③ · ④ (생략)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준세율의 1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u>다만, 제2항제2호 및 제3호는 세율을 가감할 수 없다.</u>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2. (현행과 같음) 3. ----- -----. ----- ----- <u>1원</u> -----.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 -----. <u><단서 삭제></u>
부	칙

현 행	개 정 안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46조제2항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과·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화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화력발전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및 주변지역의 생업 위축 등 환경·사회적 부담이 원자력발전에 비해 낮지 않음에도 원자력발전(1원/kwh)보다 낮은 세율(일반화력발전: 0.7원/kwh, 액화천연가스 0.6원/kwh)이 적용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의 세율을 원자력발전과 동일하게 1원/kwh 으로 상향하여 조세형평성을 확보하는 한편, 지방재정을 확충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우선 개정안의 제안이유에 나타난 입법취지는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의 세율을 1원/kwh 수준으로 상향하려는 것인데, 개정안 조문은 액화천연가스 화력발전만 0.6원/kwh에서 1원/kwh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따라서 입법의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 조문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현 행	개 정 안	입법의도를 반영한 수정의견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생 략)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현행과 같음)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개정안과 같음)
② 특정시설분 지역 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 ----- -----.	② (개정안과 같음)
1. 2. (생 략)	1. 2. (현행과 같음)	1. 2. (개정안과 같음)
3. 화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 당 0.7원. 다만, 액화천연가스를 연소하여 발전하는 경우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 6 원으로 한다.	3. ----- ----- -----. ----- ----- ----- -----1원 -----.	3. 화력발전: <u>발전량 킬로와트시(kWh) 당 1원.</u>

한편,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과 관련하여는 동 세율이 최근 3년간 2차례 인상²⁾되었으므로, 이미 단기간에 에너지 업계의 세 부담이 커진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추가적인 세율인상은 전기요금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함.

2) ('24.1.1.) 0.3 → 0.6원/kWh, ('26.1.1.) 0.6원 → 일반 0.7원, LNG 0.6원/kWh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최근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이 양호하지 않다는 점³⁾ 및 정부가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11개 분기(2023년 3분기~2026년 1분기) 연속 주택·일반용 전기요금을 동결시킨 상황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2) 원자력발전 및 화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에 탄력세율 도입

현행법상 원자력발전 및 화력발전에 탄력세율 적용이 제한되고 있어 지역의 환경부담 수준 등에 따라 세율을 조정할 수 없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구체적으로는 화력발전의 경우 오염물질의 배출량에 따라, 원자력발전은 안전 위험 수준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차등 적용하여 과세 공평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임.

이에 개정안은 탄력세율 적용 제한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지역의 환경부담 수준에 맞는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적용하여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생산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다만, 원자력·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도입 당시,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해 국가적인 통제권이 확보될 필요가 있음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별 탄력세율 적용을 배제한 입법취지⁵⁾를 감안할

3) (한진) 부채비율: '22년 459% → '23년 543% → '24년 497%

(한수원) 부채비율: '22년 165% → '23년 185% → '24년 186%

4) 전기·수도·가스 소비자물가지수 : '21년 97.9 → '22년 110.2 → '23년 132.5 → '24년 137.1 → '25년 139.7

5) 1992년 지역개발세 도입 당시부터 전 과세대상(발전용수·지하수·지하자원·컨테이너)에 대해 탄력세

필요가 있음.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에너지 정책의 국가적 통제권 차원에서 발전소가 있는 시·도간 형평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는 점, 자치단체의 탄력세율 남용으로 발전소와 지방정부간 갈등이 유발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들어 탄력세율 도입에 신중한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33

율 적용 → 당초부터 탄력세율 배제를 조건으로 도입된 화력·원자력발전과 연혁적 차이